



I. 개 요

1. 의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지방세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공익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가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 이익

을 보호하고 잘못된 과세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제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지방세 이의신청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이를 통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권리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라고 한다.

물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제제도는 청구기간, 청구절차, 결정기간, 결정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 경과한 후에 제출하여도 청구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아무리 억울한 내용이라도 청구내용 자체를 심사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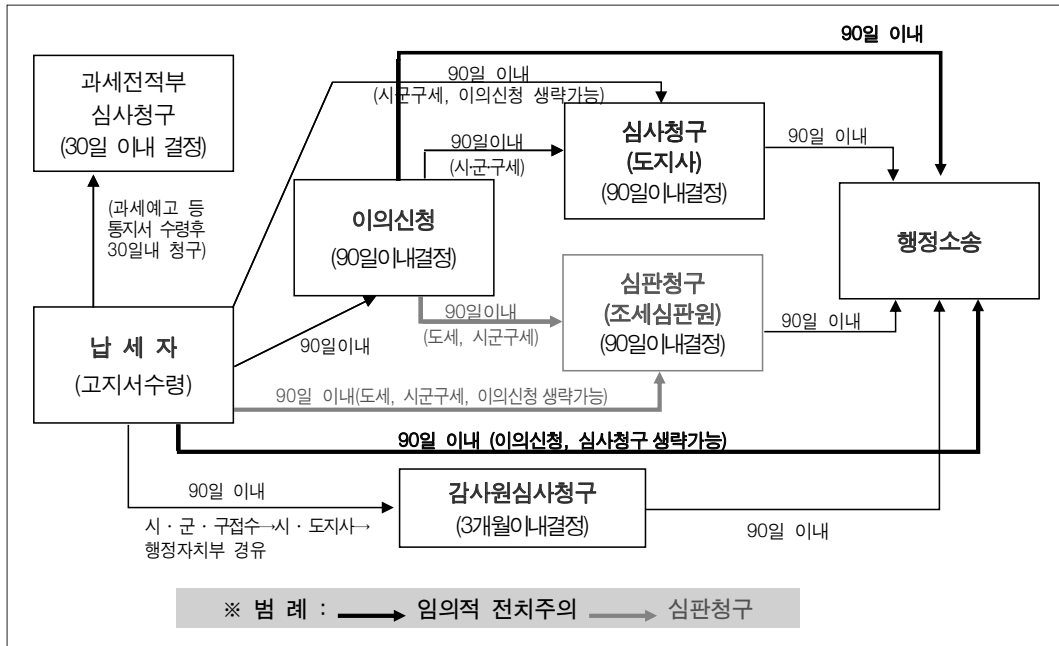
그리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던 것을, 2002.1.1.부터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00헌바30, 2001.6.28.)에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되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법 개정(2008.2.29.)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심사청구기능이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세에 대한 심사청구기관이 도지사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 대상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시도세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었으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으로 변경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와는 달리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절차 및 임의적 전치주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아니하게 된다.

2. 지방세 불복제도 청구 및 결정 흐름



[조세불복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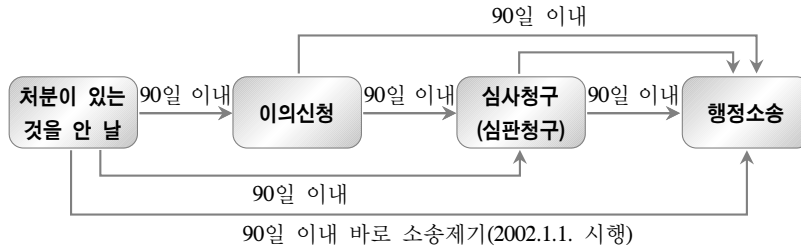
구 분				종 전		개정	
				재결청	행정소송과의 관 계	재결청	행정소송과의 관 계
국 세	이의신청			처분청	-	처분청	-
	행 정 심 판	심사청구	국세청장	필요적 전심		국세청장	필요적 전심
		심판청구	재정경제부장관소속 국세심판원	필요적 전심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	필요적 전심
지 방 세	이의신청			처분청	-	처분청	-
	행 정 심 판	심사 청구	시·군·구세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임의적 전심	도지사	임의적 전심
			도 세	행정자치부장관	임의적 전심	-	-
		심판 청구	시·군·구세/ 도세	-	-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	임의적 전심

||판례||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위헌성 판단

1.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음.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됨.
2.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임.
3. 지방세법 제81조는 동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함. (헌재 2000헌바30, 2001.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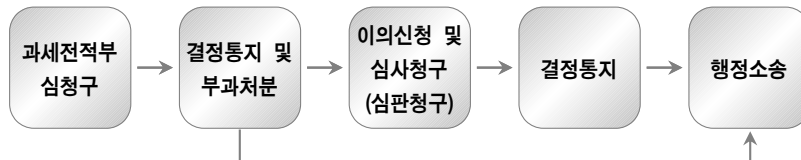
[구제절차 흐름도]

(1) 부과고지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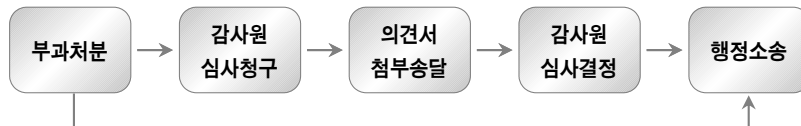
- 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 ② 결정통지는 9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 ③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 ④ 심사청구(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과세처분시 바로 행정소송 가능함).

(2)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경우



- ① 과세예고통지 등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불채택이나 심사제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부과고지를 하게 된다.
- ② 부과고지 등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 ③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다(이 경우 과세처분시 바로 행정소송 가능함).
- ④ 심사청구(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심판청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3) 감사원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 ① 과세처분이 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후 그 결정을 받은 이후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1)과 (2)를 중복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중복청구가 된 경우에는 각하처리되는 것이다.
- ② 감사원에서 이를 처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1) 개요

여기서 지방세쟁송의 대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조사심리하고 어느 범위까지 심리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송의 대상(소송물)과 범위(소송물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쟁송의 대상은 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의 존부 등이며 이것이 쟁송의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송물이라 일컬어진다. 조세쟁송의 대상인 소송물 자체는 실질적으로 세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쟁송의 범위는 소송의 대상인 소송물의 존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한계의 문제가 된다. 실체적 세액은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불가분으로 계산되어지는바 동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이에 대한 하나의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조사와 심판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체적 세액을 중시하느냐 형식적 절차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주의는 서로의 달랐던 점(쟁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항(쟁점 관련 사항)에 주안을 두고 효율적으로 조사·심리하는 방법을 쟁점주의라 부르고, 이에 반하여 원처분 모두를 검토 조사하는 것을 총액주의라고 하는바, 이러한 의미에서 총액주의는 당초처분의 전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고, 쟁점주의란 심리의 범위가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한정된 사항(쟁점 및 쟁점 관련 사항)에 한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

2) 총액주의

총액주의는 부과된 세액, 즉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분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동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총세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심리하여 실체적 총세액을 기준으로 가감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하는 이유·주장·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불복의 대상이 된 당초처분 전체 또는 당해 실체적 세액 전체에 대하여 심리·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세

액은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전체적으로 불가분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원 인별로 불가분으로 전체적으로 총합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확정과세처분의 실제적 내용인 세액 또는 조세채무는 1개의 불가분의 과세단위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당초처분이 세액의 확정절차인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절차도 실제적 진실의 세액을 추구하는 확정절차이며 그 연장상의 속행하는 절차이므로 당초처분 전체가 심리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고 보며, 둘째 확정과세처분의 전부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위 실제적 세액의 불가분성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사심리하여 진실한 실제적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셋째 조세심판도 조세행정의 일부이며 그 기능은 행정의 위법심사를 통한 행정권 자체의 자기감독·시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그 감독·시정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고 따라서 특정한 쟁점에 구애됨이 없이 조세처분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쟁점주의

쟁점주의는 당초처분 전체를 심리·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근거와 이유 및 그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심리·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쟁점사실이 심리·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1개의 과세단위의 세액계산근거가 되는 각 부분적 이유와 이에 대한 부분적 세액계산의 근거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부분적인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는 1개의 과세단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불가분적으로 계산되는 것에 대하여는 치중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세액계산의 근거기준 및 이유 등이 구분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1개의 과세단위 내의 세액계산이 각 원인별이나 요소별로 과세 근거이유 및 계산기준이 분리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각 세액계산의 요인별로 세액의 적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판단하려는 것이고 둘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의 부분에 한하여 심리·판단하고 일개의 과세단위의 세액 중 다른 요인의 세액계산과는 가감하거나 통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4)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비교

(가) 세액의 통산 여부

총액주의는 1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진실한 세액의 확정 목적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인이나 원천이 되는 각 요인별 세액의 증감사항은 모두 통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쟁점부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도 다른 이유를 들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쟁점주의는 쟁점부분, 즉 불복청구부분의 적부만을 심리하게 되어 그 외의 세액 증가요인이 새로이 밝혀진다고 하여도 이를 통산하여 당초처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쟁점부분이 위법·부당하면 시정하여야 하고 다른 과세누락 사실을 발견해도 이들을 통산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세관청이 법인인 납세자가 50억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면 이를 과세근거로 하여 취득세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처분되고 추후 당해 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인 장부가액에 관한 과세근거가 없어 당초처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아래 새로운 과세자료를 찾아서 당해 법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총액주의에 의하면 통산결과 결국 과세표준은 동일하게 되어 당초처분에 대한 위법을 이유로 이에 상당한 세액의 취소판결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쟁점주의에 의하면 당초의 처분은 장부가액에 수정을 가하게 되어 버리는 이상 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취소하게 될 것이다.

(나) 조사와 심리의 범위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쟁송기관은 다툼의 쟁송에 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이때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과세처분대상인 실제적 진실한 세액의 준부 또는 그 범위액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세법 제64조에서 질문검사권으로서 직권조사와 신청조사를 모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쟁송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한 사실만을 할 것인지 과세처분 전체 부분에 관하여 조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지 않다.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총액주의는 원처분 전체를 재조사 또는 심리하며, 쟁점주의에서는 불복청구

의 당초처분이유와 청구이유에 제기된 쟁점부분만을 국한하여 조사심리하며 총액주의에 따르면 전반적인 재조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불복청구를 기피할 우려가 있게 된다.

(대) 주장 변경, 철회 또는 추가

당초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실체적 진실한 세액의 확정을 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당초 처분의 확정처분이나 재송절차에 있어서의 판결 확정이나 모두 확정절차에 불과하며 이 점에 있어서 조세불복절차는 당초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에 대한 연장확정절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과세처분 중 부분적인 과세근거나 부분적인 불복이유에 구애될 수 없고, 실체적 진실한 세액의 인식을 위한 주장이나 자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1개의 동일한 과세처분의 대상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 등 성질이 다른 사항을 제외하고 하급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을 상급심에서도 새로이 주장할 수 있으나 각 심급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이다.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자가 이유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더라도 심판에 있어서는 이미 주장된 이유나 밝혀진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 세액의 당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액주의에 의하면 납세자가 자유로운 공격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변경·보충할 수 있으며 심리과정에서 직권주의가 적절히 가미될 때에는 납세자에게는 광범위하게 처분의 적법·해당 여부를 활용할 수 있고 주장·이유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식된 모든 사실을 재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상급심에서 추가하여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주의에서는 주장·심리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당초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불복청구인은 당초 불복청구의 주장·이유에 대하여 변경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심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은 추가로 상급심에서 주장할 수 없는바, 이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주의에 의하면 납세자가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쟁점을 일차적

으로 청구인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지만 처분이유가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실에서 납세자가 쟁점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불복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납세자에게는 불리하다. 이때에 불복청구 부분에 있어서 당초과세처분의 근거·이유를 중심으로 하느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하느냐가 문제되며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원칙적으로 불복청구부분에 국한하여 조사심리하게 되는데, 첫째, 당초처분의 처분당시의 과세요인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심리의 대상이 되므로 그 후 새로운 과세근거나 이유를 보충하여 과세처분이유를 정당화시킬 수 없고, 당초처분이유가 부당하면 취소되나 당초처분근거와 동일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당초처분 중 불복청구부분의 불복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심리하고 그 외의 요인에 대한 당부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복처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세액의 증가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감하여 당초처분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청구부분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후에 있어서의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불복청구부분에 심리대상이 국한되므로 하급심(이의신청서)에서 불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상급심(국세심판원 등)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전심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전심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서 전치주의에 위배되어 각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기판력과 청구범위

쟁점주의에 의하면 구체적 위법이유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과 취소소송의 범위가 구분되고 취소소송은 개개의 구체적 위법이유마다 제기되지 않으면 안되므로 만약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모든 처분요건에 관한 개개의 위법사유를 미리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지 하여야 하나 총액주의에 의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쟁점주의에 의하면 1개 과세단위 중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세액의 탈루사실이 있는 등 새로운 과세근거가 발견된 때에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데 반하여, 총액주의에 의하면 1개 과세단위 내의 실체적 세액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하기 때

문에 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위법성 일반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되고 새로이 누락소득이 발견 되어도 과세청으로는 추가 경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마) 경정처분시의 제소기간

과세처분에 대하여 경정, 재경정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는 흡수설(소별설)과 병존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소의 이익, 제소기간 등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총액주의가 실체적 세액에 기준을 두고 이를 소송물로 보고 있는 점에서 흡수설은 실체적 세액의 불가분적 과세단위의 특성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서 양자는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실체적 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개별적인 과세근거나 이유는 중시되지 않고 하나의 과세단위 내의 세액계산은 불가분적으로 되므로 선행처분(당초처분)은 후행처분(경정처분)과 일체가 된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총액주의는 흡수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쟁점주의에 의할 때에는 과세단위 중 요인별 과세근거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선행처분에 있어 각각의 처분에 따라 세액계산이나 처분의 요인이 되는 부분별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쟁점주의는 병존설과 관련이 있다.

5)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판례

대법원 판례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로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거나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지된 세액이 원래 당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결과로 그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정당세액 범위 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총액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

와 판결시, 즉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데 처분시설이 통설이고 판례이다(대법원 88누12257, 1989.3.28.; 대법원 87누1079, 1988.6.7.). 따라서 처분시설에 의하면 처분 후의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당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사후에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하게 된다. 여기서 적법 여부의 판단시점이 처분당시라는 것과 처분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출시기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처분시라는 의미는 처분당시에 존재하였던 자료와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당시에 존재하던 사정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처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까지 입증할 수 있고 법원도 그 변론종결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상태를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액주의에서도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대법원 87누429, 1987.9.8.) 법원은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소송에서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면 처분시의 처분사유와 다른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는 총액주의의 입장에 있다.

지방세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의 심리의 과정에 있어서 원처분의 이유로 되었던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 처분청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과세요건사실을 새로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심사청구 및 법원은 새로운 별개의 이유가 제출된 경우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청구이유의 변경의 여부이지만 조세쟁송의 대상 내지 조세소송의 소송물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총액주의와 쟁점주의가 대립하게 된다.

총액주의에 따르면 확정처분에 대해 쟁송의 대상 및 심리의 대상에 처분에 의해서 확정된 전체세액에 대한 적부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액의 존재를 주장하고 새로운 이유의 변경은 심사청구의 심리 또는 소송에 있어서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원칙으로서 자유

롭게 인정되므로 납세자측의 입장에서는 총액주의가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쟁점주의는 확정처분 및 처분이유와 관련하는 세액에 대한 것으로 이유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아서 기관력 등에서 납세자의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현행 조세쟁송에 있어서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2002.12.28.부터 적용하고 있다.

|| 판례 ||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96누10768, 1997.10.24.; 대법원 98두3211, 1998.5.26. 참조), 위와 같은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되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82누55, 1982.9.14. 참조). (대법원 2007두5844, 2008.5.29.)

4.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불복청구대상

1) 불복청구대상과 범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즉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보통고지되거나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 기타 처분(압류결정 등)을 받았거나 그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막연한 사항이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등은 권리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첫째,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할 결정기관의 처분(이의신청결정,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바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둘째, 통고처분이라 함은 조세범 등의 행정법에 대하여 벌금 · 과료 · 몰수나 추징금 상당액 등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거나 납부의 신청을 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로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사안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적으로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두 기관에 중복제출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본안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의 처분결정(불채택, 심사제외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과세기관의 향후 과세방향에 대한 공적인 견해이다.

2) 신고납부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성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규정과는 달리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어서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세목의 경우 권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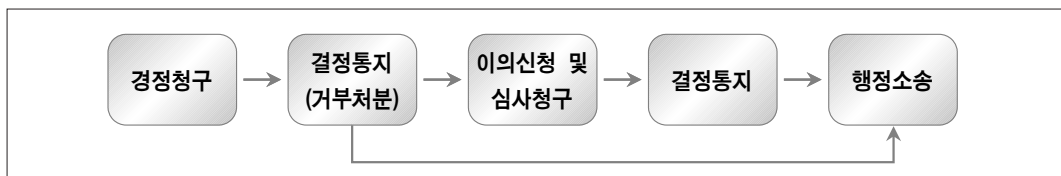
제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3누2117, 1993.8.24.)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납부 방식으로 신고 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다음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3) 경정청구의 거부처분과 불복과의 관계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통지 받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통지결과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경정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결정 또는 경정을 행하지 않고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의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과세관청의 부작위에 해당되므로 그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납부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①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의 내용이 거분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거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불복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② 부과고지 등 과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나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한다.

II. 이의신청

1. 의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시·군·구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그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구제절차를 말한다. 제1심적 구제절차인 동시에 상급기관에 하는 심사청구를 하기 위한 전심절차이다.

2. 이의신청 대상범위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즉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보통고지되거나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 기타 처분(압류결정 등)을 받았거나 그 이외에도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등은 권리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3. 신청절차

(1) 신청권자

지방세부과처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구제절차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은 납세자 본인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

- ①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 ②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 ③ 납세관리인
- ④ 상속재산의 관리인 · 상속인
- ⑤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2) 신청서 제출기관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 · 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 · 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시 · 군 · 구세—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② 도세—도지사에게 제출(시장 · 군수에게 접수가능)
- ③ 특별시세, 광역시세—특별 · 광역시장에게 제출(구청장도 접수가능)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되,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중 1부만을 이송한다. 따라서 시·군·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법정 신청기간 내에 결정기관에 접수되어야 유효하며, 납세고지서에 구제방법에 관한 안내를 잘못된 경우 그 안내에 따라 다른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된 경우에도 정당한 기관에 이의신청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3) 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한 경우라도 불복절차(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포함)로서는 구제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세법에 의한 직권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는 불변기간에 해당하며,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처분의 내용을 서면(고지서)으로 교부받았거나 그 서면이 신청권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장소에 도달되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실제로 신청권자가 그 처분의 내용을 인지하였든 인지하지 아니하였든 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등기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교부일이 해당되는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는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특히 그 기산일과 기간만료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사 례

신고납부세액의 심사청구기간일

감사원법 제44조에서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0조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

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 이하 이 절에서 같음)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의 감사원심사청구의 기산일은 「신고납부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3012, 2006.7.14.)

|| 판례 || 심사청구기간과 초일불산입문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함. (대법원 98두16828, 1999.2.12.)

여기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기한의 연장)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중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하여 90일 이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결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한 이의신청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①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전쟁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
- ②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종인 때
-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④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출서류

제출서류로서 이의신청서(별지 제41호의 4 서식)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시·군·구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권자가 이의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내용은 권리구제를 신청할 경우 지방세이의신청서 서식에 불복청구취지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청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복청구취지는 과세관청의 세금부과 등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재한 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정정을 구하는 뜻을 밝히고, 청구원인으로서 신청하는 사람이 주장이 정당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정

불복청구결정기관은 이의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보정요구는 문서로써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① 정당한 신청권자의 신청이 아닌 경우
- ② 신청서식이 별지 제41호의 4 서식이 아니거나 소요부수에 미달한 경우
- ③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④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⑤ 신청인의 명의와 인장이 기명날인되지 아니한 경우
- ⑥ 기타 중요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한 결정기관은 다음의 요

건이 불비하였을 때에 신청인에게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써 이를 보정하거나, 도·시·군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도·시·군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또한 보정요구기간(20일간)은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보정하여 제출한 기간이 20일 이내였다 하더라도 20일間は 결정기간(60일)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8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열람청구권 및 의견진술권

지방세구제제도의 준수법적 절차도입에 따라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1) 서류의 열람청구권

이의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견진술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에 대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이의신청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그 신청이 있을 때
- ② 이의신청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의견진술은 간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 기타 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별지 제41호의 9 서식 : 의견진술신청서], [별지 제41호의 10 서식 : 출석통지서], [별지 제41호의 11 서식 :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 참조

그밖에 지방세 이의신청에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7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즉 행정심판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 ① 행정심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42호 서식
- ② 행정심판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해임 : 별지 제42호의 2 서식
- ③ 행정심판법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42호의 3 서식
- ④ 행정심판법 제1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42호의 4 서식
- ⑤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42호의 5 서식
- ⑥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42호의 6 서식
- ⑦ 행정심판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42호의 7 서식
- ⑧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42호의 8 서식
- ⑨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42호의 9 서식
- ⑩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42호의 10 서식
- ⑪ 행정심판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42호의 11 서식

5. 결정의 기간과 방법

(1) 결정기간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 제기가 가능하다.

(2) 결정구분

이의신청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관장이 결정하던 것을 1997년부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의결위원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결을 받도록 그 규정을 변경하였고 결정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각하결정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바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청구기간과 보정기간을 지난 후 청구 또는 보정하였을 때
- ②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행위가 없을 때
- ③ 정당한 청구권자가 청구한 것이 아닌 때
- ④ 청구의 내용이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아닌 때
- ⑤ 이의신청 전에 감사원에의 심사청구가 있는 때

특히 청구의 내용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리를 할 수가 있으나, 그 처분이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처리되는 것이다. 즉 취득세 의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고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각하처리 대상인 것이다.



사 례

환부거부통지와 각하대상 판단

과오납금 환부거부가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과세권자가 하는 환부결정은 이미 확정된 환부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환부절차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부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2누14250, 1994.12.2.)에 비추어, 지방세법상 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견 환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러한 의사표시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처분이 있었던 날(청구인이 이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1996.11.29.)부터 60일(1999.1.1. 이후에는 90일) 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환부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경과하여 환부청구를 한 이상 이를 거부한 행위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행자부 심사 제2000-1호, 2000.1.26.)

(나) 기각결정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청구의 이유가 지방세법상 타당성이 결여된 때나,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 인용하기 어려운 때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취소 또는 경정결정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결정하는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청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나 처분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명백할 때 등이 해당하는 것이다.

(라) 결정의 경정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3) 결정의 통지

결정결과는 주문과 이유(처분요지, 청구취지 및 이유, 결정권자의 판단경위와 이유 등)를 붙인 결정서 원본과 부본을 작성하여 원본은 청구인에게, 부본은 처분청에 각각 송부(배달증명우편)하여야 한다. 결정서 통지시에는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이의신청결정의 효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어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Ⅲ.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1. 의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관의 상급감독청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제2심적 구제절차인 동시에 행정소송제기의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결정이 적법 또는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즉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청구대상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의신청시에 청구되었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나 체납처분 등이 포함되나 이의신청시에 불복한 처분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각하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이의신청시에 취득세만을 다투었으나 심사청구(심판청구)시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청구한 경우에 등록면허세 부분은 각하처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당초 주장을 달리하는 등 불복의 사유를 달리하여 심사청구(심판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당초 이의신청시의 주장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50%만 감면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전액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3. 청구절차

(1) 청구권자와 청구서 제출기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와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자와 바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또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위임받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청구기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불변기간이나 기한의 연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되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심사청구(심판청구)서는 별지 제41호의 6 서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일,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심사청구(심판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세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재결은 재결청이 청구인에게 그 결정(재결)서의 정본송달이 있을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행정심판법 § 38 ②).

4. 재결청의 재결 효력

- ① 확정력(불가변력, 불가쟁력)
- ② 기속력
- ③ 형성력

첫째, 행정행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력이 발생되어 이를 사실로 존중하여 다룰 수 없는 불가쟁력과 행정주체도 일정한 행위를 자유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절차로서의 불복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행정심판법 § 39),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결정(재결)은 준사법적인 재송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진 판단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상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재결청 스스로도 자신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둘째, 처분의 취소·변경 재결에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예컨대,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 재결이 있으면 원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취소·변경처분이 없이도 원처분청에 소급하여 재결내용대로 취소·변경되어 버린다. 그러나 의무이행 재결은 성질상 소급하지 아니하며 재결시부터 재결내용대로 행하여진 것으로 처리된다.

셋째,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행정심판법 § 37 ①). 즉 관계행정청 등은 당해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이와 모순되는 내용의 동일한 처분을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반복해서는 안된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고, 기각재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재결이 있더라도 원처분청이 취소·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86누127, 1986.5.27.).

IV. 감사원 심사청구

1. 의의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조세(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 43). 이는 감사권 행사의 결과로 시정조치(과세관청을 내부적으로 구속)하는 권리구제의

측면과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심절차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감사원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의 조치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시·군·구)은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빙서류(3부)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도지사(특별·광역시장)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심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변명서」와 관계증빙서류(2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및 도지사(특별·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정조치한 후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감사원결정 전까지 시정조치 가능하며 접수기관은 접수일부인이 있는 접수증을 발부하여야 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관계기관(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이 사항을 접수증에 첨부하는 등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접수한 지 1개월이 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인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동시에 제기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각하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의 결정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다음의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가 아닌 경우
- ②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③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④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의 재결이 있는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⑤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
- ⑥ 기타 감사원법 또는 감사원심사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원은 심리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그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V. 행정소송

1. 의의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거나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고도 다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고등법원(1998.3.1.부터는 행정법원에서 제1심 심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원(설치일 : 1998.3.1.)]

① 설치지역

- 서울 : 행정법원(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내)
- 지방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역할수행

② 행정법원의 역할(법원조직법)

일반법원의 하나로 행정사건의 소송에 관한 1심을 담당하며 1998.3.1. 이전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관한 행정소송도 처리한다(행정소송법 부칙 § 2).

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는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에 의거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2.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행정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피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4.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거 행정소송이 제기되거나 상고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직원 또는 상급기관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상급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 각급 검찰청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행정소송과 소송비용

1) 인지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지를 붙여야 하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첨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인지부담은 다음과 같다(민사소송등인지법 § 2).

- ① 소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② 소가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 원을 가산한 금액
- ③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000 원을 가산한 금액
- ④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5,000원을 가산한 금액

그리고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 규칙으로 하며,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

2) 소송비용의 부담

행정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취소청구가 행정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